

## 「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」(2023. 12. 29.)

- ☞ 현행 법령상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,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관련 행위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
- ☞ 사교육업체 등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 공정성 확보 및 교육 신뢰 회복

### □ 적용 대상 및 범위

- (목적) 국가공무원법령 범위 내에서 교원 대상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행위 및 사례를 구체화하여 현장 혼란 최소화 및 공교육 공정성 제고
- (적용대상) 유·초·중등 교원(기간제교원 포함)
- (적용범위)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 범위 내에서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 사례 등 본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
- (세부 기준) 시·도교육감은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

### □ 국가공무원법령 규정에 따른 원칙

- ①직무 능률 저하, ②공무에 부당한 영향, ③국익에 상반되는 이익 발생, ④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이 우려되는 영리행위는 금지
-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26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 가능
  - 단, 영리행위가 아니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도 겸직 허가 대상이며,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

### □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

#### ①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업무

- (범위)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이하 학원법)」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\*
  - \* 학원법 제2조의2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,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며, 학원설립·운영 등록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(붙임6)
- (업무) 강의, 문항 출제\*, 출판,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
  - \* 학원, 학원 강사, 출판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학원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활동
  -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,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(원격)컨설팅, 강의 영상(유상) 제작 등 교습행위를 포함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
- (계속성 있는 (비)영리업무) 복무규정 제25조 및 예규 겸직 허가 요건에 따라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
- (계속성 없는 행위)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
  - \* 학원법 제3조(교원의 과외교습 제한)에 따라 교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에서 과외교습 금지